

『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2월 1일

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

나. 제안이유

조례에 규정된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
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,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
일부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○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되었을 때 열람기간을 상위
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(안 제10조)

가. 법률에 따라 청구인서명부의 열람기간을 7일로 규정

○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촉 위원
의 구성 비율 규정을 신설(안 제12조)

가.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 위원 구성

○ 공고의 대상이 되는 법조문 추가(안 제16조)

가. 법 제26조(재투표 및 투표연기) 제1항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주민투표법」, 「양성평등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검토결과

본 조례안은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되었을 때 열람기간과 공고대상이 되는 사항을 추가하고,
- 그 밖의 사항들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개정의 법적근거가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